

#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330
----------	------

제출연월일 : 2017. 3. 8.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 1. 개정이유

- 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2016. 1. 6) 되었으며,
- 나.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6. 7. 6)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을 상위 법령명 변경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제명 변경)
- 나.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명칭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안 제2조)
- 다.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명칭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변경(안 제5조)
- 라.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근거 마련 및 전자게시대 설치규제 완화(안 제6조)
- 마. 그 밖에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3. 근거법규

-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다.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4. 전부개정조례안 : 따로 붙임

## 5.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사항 : 해당없음
  - 나. 규제사무 심의 : 해당없음
  - 나. 성별영향분석 평가 : 의견없음
  - 라. 입법예고 : 2017. 1. 9. ~ 1. 31.(의견없음)
  - 마. 조례규칙심의회 : 원안가결
-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제790호

##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 광고물은 제외한다.

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
2.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
3.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4.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
5. 그 밖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②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
2.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중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벽보·전단의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벽면 이용 간판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시 조례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영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 구청장이 원활한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등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제6조(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

를」(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전자계시대에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계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

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등

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

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계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대상 용도)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8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
3. 광고물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
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민협의회 운영) ①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주민협의회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
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
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협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

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디자인 관련 전문가

다. 해당 지역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2. 주민협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주민협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자율관리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4. 위원장은 주민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주민협회를 소집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주민협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7. 그 밖에 주민협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③ 주민협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주민협회는 그 대표자 및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변동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

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

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울산광역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
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한 후에 광고물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1조(광고물등의 정비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광고물등의 외국어 병기)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물면적과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
2. 광고물등의 디자인
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의 병기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등 관련 업무를 담

당하는 공무원

2.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임직원 및 국어·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등 광고물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② 심의위원회는 심의안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 15일(소위원회는 10일) 이내에 한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 ⑥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과 영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높이 4미터 이상인 광고물등의 표시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
- 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
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
-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회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③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심의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자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자격(「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자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울산광역시중구 도시관리공단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자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사무실
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
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8조(안전점검의 위탁절차 등) ①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중에서 하나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9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규정한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0조(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수거 보상) 구청장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등을 제거 또는 수거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 등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제거된 광고물등의 관리 등) 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 정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종류 및 수량
2. 광고물등의 표시 내용
3. 위반 장소 및 위치
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영 제40조제1항의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행정대집행의 특례 및 비용청구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 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 등과 불법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에 대하여 즉시 제거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할 때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등에 징수하여야 한다.

제23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 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내용·시간 및 장소
2. 교육 대상자
3. 교육 실시방법·절차 및 비용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제3항에 불구하고 구청

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교육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탁받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4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4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6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구청장이 일제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23조 관련)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가. 벽면 이용 간판,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30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5만원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45만원
- 16㎡ 이상 18㎡ 미만	165만원
- 18㎡ 이상 20㎡ 미만	185만원
4) 면적 20㎡	200만원
- 2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20만원
- 2㎡ 이상 3㎡ 미만	30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9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 이상 8㎡ 미만</li> <li>- 8㎡ 이상 9㎡ 미만</li> <li>- 9㎡ 이상 10㎡ 미만</li> <li>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 이상 12㎡ 미만</li> <li>- 12㎡ 이상 14㎡ 미만</li> <li>- 14㎡ 이상 16㎡ 미만</li> <li>- 16㎡ 이상 18㎡ 미만</li> <li>- 18㎡ 이상 20㎡ 미만</li> </ul> </li> <li>4) 연면적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 초과하는 면적 1㎡당</li> </ul> </li> </ul>	<p style="text-align: right;">75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85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95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11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13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15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17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19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20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10만원을 더한 금액</p> <p style="text-align: right;">* 500만원 이하</p>
<p>다. 지주 이용 간판,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면적 3㎡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5㎡ 미만</li> <li>- 0.5㎡ 이상 1㎡ 미만</li> <li>- 1㎡ 이상 2㎡ 미만</li> <li>- 2㎡ 이상 3㎡ 미만</li> </ul> </li> <li>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 이상 3.5㎡ 미만</li> <li>- 3.5㎡ 이상 4㎡ 미만</li> <li>- 4㎡ 이상 4.5㎡ 미만</li> <li>- 4.5㎡ 이상 5㎡ 미만</li> </ul> </li> <li>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 이상 6㎡ 미만</li> <li>- 6㎡ 이상 7㎡ 미만</li> <li>- 7㎡ 이상 8㎡ 미만</li> <li>- 8㎡ 이상 9㎡ 미만</li> <li>- 9㎡ 이상 10㎡ 미만</li> </ul> </li> <li>4) 연면적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 초과하는 면적 1㎡당</li> </ul> </li> </ul>	<p style="text-align: right;">3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35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4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48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55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65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8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95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11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13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15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17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19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200만원</p> <p style="text-align: right;">10만원을 더한 금액</p>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 500만원 이하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의 벽면 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 미만	30만원
- 2㎡ 이상 3㎡ 미만	35만원
- 3㎡ 이상 4㎡ 미만	40만원
- 4㎡ 이상 5㎡ 미만	48만원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 이상 6㎡ 미만	55만원
- 6㎡ 이상 7㎡ 미만	65만원
- 7㎡ 이상 8㎡ 미만	75만원
- 8㎡ 이상 9㎡ 미만	85만원
- 9㎡ 이상 10㎡ 미만	95만원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 이상 12㎡ 미만	110만원
- 12㎡ 이상 14㎡ 미만	130만원
- 14㎡ 이상 16㎡ 미만	150만원
- 16㎡ 이상 18㎡ 미만	170만원
- 18㎡ 이상 20㎡ 미만	190만원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 이상 25㎡ 미만	210만원
- 25㎡ 이상 30㎡ 미만	230만원
- 30㎡ 이상 35㎡ 미만	245만원
- 35㎡ 이상 40㎡ 미만	260만원
- 40㎡ 이상 45㎡ 미만	280만원
- 45㎡ 이상 50㎡ 미만	290만원
5) 연면적 50㎡	300만원
- 50㎡ 초과하는 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p>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p> <p>1) 선전탑, 아치광고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5㎡ 미만</li> <li>- 연면적 5㎡ 이상 10㎡ 미만</li> <li>-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li> <li>-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li> <li>- 연면적 20㎡</li> <li>- 20㎡ 초과하는 연면적 1㎡당</li> </ul> <p>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애드벌룬(공) 1개</li> <li>- 애드벌룬(공) 2개</li> <li>- 애드벌룬(공) 3개 이상</li> </ul>	<p>30만원</p> <p>50만원</p> <p>60만원</p> <p>70만원</p> <p>75만원</p> <p>5만원을 더한 금액 * 500만원 이하</p> <p>30만원</p> <p>60만원</p> <p>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p>
<p>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p> <p>1) 시계탑·조명탑·안내탑·일기예보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5㎡ 미만</li> <li>- 연면적 5㎡ 이상 10㎡ 미만</li> <li>- 연면적 10㎡ 이상 15㎡ 미만</li> <li>- 연면적 15㎡ 이상 20㎡ 미만</li> <li>- 연면적 20㎡</li> <li>- 20㎡ 초과하는 연면적 1㎡당</li> </ul>	<p>30만원</p> <p>50만원</p> <p>60만원</p> <p>70만원</p> <p>80만원</p> <p>5만원을 더한 금액</p>

광고물등	이행강제금
2) 교통안내소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3) 안내게시판 · 지정벽보판 · 버스승강장 · 택시승강장 · 관광 안내도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4)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p>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p> <p>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p> <p>1) 비행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면적 10㎡ 미만 150만원</li> <li>- 연면적 10㎡ 160만원</li> <li>- 10㎡ 초과하는 연면적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li> </ul> <p>2) 그 밖의 교통수단</p> <p>가) 연면적 3㎡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미만 10만원</li> <li>- 1㎡ 이상 2㎡ 미만 20만원</li> <li>- 2㎡ 이상 3㎡ 미만 29만원</li> </ul> <p>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 이상 4㎡ 미만 35만원</li> <li>- 4㎡ 이상 5㎡ 미만 45만원</li> </ul> <p>다) 연면적 5㎡</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 초과하는 연면적 1㎡당 50만원</li> <li>- 5㎡ 초과하는 연면적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li> </ul>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4조제1항 관련)

종 류	교육시간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방법	비 고
신규 교육	6시간	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2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	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안전점검 종사자를 포함한다)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 대상자 교육	3시간	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	따로 정함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 [별표 3]

## 광고물등의 허가·신고 수수료(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광고물등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
나. 돌출가판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약국 표지등(개당)	20,000원 1,000원 5,000원
다. 공연간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가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40,000원 5,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0,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 공중에 띄우는 것(1개)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20,000원 옥상가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3,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13,000원 1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광고물등	수수료
- 비행선 - 비행기·철도차량·도시철도차량·선박 - 사업용자동차·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	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	5,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	5,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입간판	4,000원
파. 현수막 1) 일반현수막(가로등 현수기를 포함한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6,000원 1,500원 5,000원 1,000원
하. 벽보(50매당)	5,000원
거. 전단(1,000매당)	5,000원
너. 전자게시대(1건)	6,000원
더. 네온류, 전광류, 디지털광고물	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광고물등별로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시설(광고물의 테두리를 포함)은 포함한다.
2.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고, 광고물등의 규격·사용자재·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4. 현수막 지정게시대, 지정벽보판, 전자게시대 등 구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물 사용료는 별도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별표 4]

광고물등 안전점검 수수료(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광고물등	적용기준	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1,600원
다. 옥상간판	-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21,000원 38,000원 1,3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4,000원 20,000원 8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	11,000원 6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별표 5]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제26조제1항제3호 관련)**

구 분	수수료	비 고
가. 옥외광고사업 신규 등록	15,000원	
나. 옥외광고사업 변경 등록	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사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별표 6]

**과태료 부과기준(제27조 관련)**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과태료
1.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위반)	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 포함)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미만		13만원
- 0.5㎡ 이상 0.8㎡ 미만		22만원
- 0.8㎡ 이상 1㎡ 미만		32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42만원
- 1.3㎡ 이상 1.6㎡ 미만		50만원
- 1.6㎡ 이상 2㎡ 미만		64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75만원
- 2.3㎡ 이상 2.6㎡ 미만		100만원
- 2.6㎡ 이상 3.0㎡ 미만		129만원
라) 연면적 3㎡		130만원
- 3㎡ 초과하는 면적 0.5㎡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미만		8만원
- 0.5㎡ 이상 0.8㎡ 미만		12만원
- 0.8㎡ 이상 1㎡ 미만		14만원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 이상 1.3㎡ 미만		25만원
- 1.3㎡ 이상 1.6㎡ 미만		33만원
- 1.6㎡ 이상 2㎡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 이상 2.3㎡ 미만		58만원
- 2.3㎡ 이상 2.6㎡ 미만		67만원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과태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6㎡ 이상 3.0㎡ 미만</li> <li>라) 연면적 3㎡</li> <li>- 3㎡ 초과하는 면적 0.5㎡당</li> </ul>		<p>79만원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p>
<p>나. 현수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면적 3㎡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미만</li> <li>- 1㎡ 이상 2㎡ 미만</li> <li>- 2㎡ 이상 3㎡ 미만</li> </ul> </li> <li>나) 면적 3㎡ 이상 5㎡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 이상 3.7㎡ 미만</li> <li>- 3.8㎡ 이상 4.4㎡ 이하</li> <li>- 4.5㎡ 이상 5.0㎡ 미만</li> </ul> </li> <li>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 이상 6.0㎡ 이하</li> <li>- 6.1㎡ 이상 8.0㎡ 이하</li> <li>- 8.1㎡ 이상 10.0㎡ 미만</li> </ul> </li> <li>라) 면적 1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 초과하는 면적 1㎡당</li> </ul> </li> </ul>		<p>8만원 12만원 14만원 22만원 25만원 32만원 42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p>
<p>다. 벽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일반 광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이상 10장 이하</li> <li>- 11장 이상 20장 이하</li> <li>- 21장 이상</li> </ul> </li> <li>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이상 10장 이하</li> <li>- 11장 이상 20장 이하</li> <li>- 21장 이상</li> </ul> </li> </ul>		<p>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42천원  장당 25천원 장당 33천원 장당 50천원</p>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과태료
<p>라. 전단</p> <p>1) 일반 광고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이상 10장 이하</li> <li>- 11장 이상 20장 이하</li> <li>- 21장 이상</li> </ul> <p>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장 이상 10장 이하</li> <li>- 11장 이상 20장 이하</li> <li>- 21장 이상</li> </ul>		<p>장당 8천원</p> <p>장당 17천원</p> <p>장당 25천원</p> <p>장당 25천원</p> <p>장당 33천원</p> <p>장당 50천원</p>
<p>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30일 이상 90일 미만</li> <li>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li> <li>다. 180일 이상 1년 미만</li> <li>라. 1년 이상</li> </ul> <p>3.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연 1회 위반한 경우</li> <li>나. 연 2회 위반한 경우</li> <li>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li> </ul> <p>4.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1회 위반한 경우</li> <li>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li> <li>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li> </ul>	<p>법 제20조제1항제2호</p> <p>법 제20조제1항제5호</p> <p>법 제20조제2항</p>	<p>67만원</p> <p>117만원</p> <p>217만원</p> <p>400만원</p> <p>80만원</p> <p>200만원</p> <p>500만원</p> <p>25만원</p> <p>45만원</p> <p>100만원</p>
<p>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p> <p>1. 법 제4조, 제5조 위반의 경우에는 영 별표8의 과태료 금액 기준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1.5배를 적용한다.</p> <p>2.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p>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	근거 법조문	과태료
---------------	--------	-----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표시(변경)허가 및 신고대장(제3조제1항 관련)**

①번 호	광고주(옥외광고사업자)						광고물등의 내용							관리자			⑱번 경 사 항	⑲번 비 고
	②성 명	③생 년 월 일	④업 소 명	⑤전 화 번 호	⑥주 소	⑦옥외광고사업등록번호	⑧종 류	⑨수 량	⑩규 격	⑪표 시 위 치	⑫표 시 간 격	⑬광 고 내 용	⑭준 공 일 자	⑮성 명	⑯주 소	⑰전 화 번 호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m<sup>2</sup>]

[별지 제2호서식] - 제3조제2항 관련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신청서(제18조제3항 관련)**

제 호	처리기간 30일
-----	----------

신 청 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 소	

영업장 소재지	전 화 번 호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	수수료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제18조제4항 관련)

제 호			
수탁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 소		

영업장 소재지	위탁기간	20 . . . . ~ 20 . . . .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 제18조제6항 관련

규격 가로 6cm x 세로 8cm < 앞 쪽 >	바탕색 연녹색	글자 검정색 < 뒤 쪽 >
-------------------------------	---------	-------------------

  

<p><b>옥외광고물 안전점검 검사원증</b></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80%; margin: 0 auto; height: 15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p>사 진  (3.5×4.5)</p> </div> <p>울산광역시 중구</p>	소 속 : 직 위 : 성 명 : 생 년 월 일 : 자 격 기 한(20 . . . ~ 20 . .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 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사원임을 증명함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span style="border: 1px solid orange; padding: 2px;">직인</span>
---	--

[별지 제6호서식]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검사서(제19조제1항 관련)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전화번호	
	주소	검사구분	[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	광고물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	광고물등의 규격
신청일자	검사일자

점검내용	
점검의견	
점검결과	[ ] 합격 , [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검사자 소속  
성명

직위(직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기준	검사결과
기본사항		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		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		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	기초부분	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 (하중, 풍압력 등 고려)	
	구성자재	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용접상태	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		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 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 사항		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		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대장(제19조제1항 관련)

① 신청 번호	② 신청 일자	신청자			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	⑦ 광고물 등의 종류	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	⑨ 광고 물등 의 규격	⑩ 검사 일자	⑪ 검사 구분	⑫ 검사 결과	검사자			⑬ 소속	⑭ 직명	⑮ 성명	⑯ 비고
		③ 성명	④ 업소 명	⑤ 주소								⑬	⑭	⑮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m<sup>2</sup>]

[별지 제8호서식]

### 제거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제21조제3항 관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일련 번호	광고물 종 류	표 시 내 용	수 량	보 관 연월일	보 관 장 소	위반장소 · 위치	담 당 (취급)자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9호서식]

### 옥외광고물 등 청구서(제21조제4항 관련)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광고물등 종류		수 량	
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광고물등 종류		수 량	
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

인 수 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제24조제5항 관련)

제	호		
교육과정명			
교육수료일자			
수강자	성명		
	소속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4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 교육위탁지정신청서(제25조제1항 관련)**

제 호		처 리 기 간	30일
--------	--	------------------	-----

신 청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업 소 명 ( 단 체 명 )			
	주 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수수료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별지 제13호서식]

###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제25조제2항 관련)

제 호			
수탁자	성 명		생년월일
	업소명(단체명)		
	주 소		
영업장소재지			전화번호
위탁기간	20 .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17A울산중구003		
정책명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울산광역시 중구	
	부서명	디자인건축과	
	담당자명	오창훈	전화번호 052-290-4023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7년 1월 9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디자인건축과)	<p>본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균형 참여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p> <p>개정的主要内容은 조례명을 상위 법령명 변경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제명 변경),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명칭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안 제2조),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명칭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변경(안 제5조),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근거 마련 및 전자게시대 설치규제 완화(안 제6조),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수수료 인하(6,000원→5,000원)(별표 3), 그 밖에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등에 대한 내용임</p>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p>「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p> <p>○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p>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7년 01월 16일</p> <p style="text-align: center;"><b>울산광역시 중구 분석평가책임관</b> (담당자/연락번호 : 김양선/052-290-3622)</p> <p>디자인건축과장 귀하</p>			

**참고 1**      **관계법령 발췌**

**□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등)** 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교통시설

- 가. 지하도
- 나. 철도역
- 다. 지하철역
- 라. 공항
- 마. 항만
- 바. 고속국도

2.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

-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이하 "도시철도차량"이라 한다)
-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 다.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이하 "선박"이라 한다)
- 라.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8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서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이용하여 정보·광고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디지털 디스플레이(전기·전자제어장치를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평면 혹은 입체적으로 표시하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의 노출로 화면·형태의 변화를 주는 등 정보·광고의 내용을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옥외광고물(이하 "디지털광고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1. 벽면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붙이거나 표시하는 것

나. 문자·도형 등을 도료, 색상이 표시된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벽면, 유리벽의 바깥쪽, 옥상난간 등에 길게 표시하는 것

다.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懸垂式)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삭제

3. 돌출간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4. 공연간판: 공연·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그림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계단탑·망루·장식탑·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지주(支柱)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나. 문자·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사각기둥·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다.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6의2. 입간판: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천·종이·비닐 등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애드벌룬: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9. 벽보: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계시관·지정벽보관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10. 전단: 종이·비닐 등에 문자·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의 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제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교통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도형 등을 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4. 선전탑: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5. 아치광고물: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다음 각 목의 것
  - 가. 문자·도형 등을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여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설치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붙이거나 표시하는 광고물
  - 나. 문자·도형 등을 도료,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의 유리벽의 안쪽, 창문, 출입문에 표시하는 것

**제3조의2(디지털광고물의 적용·표시대상)** 제3조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 또는 제16호의 광고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디지털광고물을 적용하거나 표시할 수 있다.

**제4조(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 가.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

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중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광고물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다.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제14조(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광고를 표시하도록 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를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디지털광고물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전자게시대"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다.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 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 다. 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2. 전자게시대의 표시방법은 제14조를 따른다.

3.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의 경우로서 교통신호 기와 혼동이 되지 아니하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5. 광고내용의 표시면적은 12제곱미터 이내이어야 한다.

**제19조의2(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① 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표시등(表示燈)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이 조에서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라 한다)를 201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를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역과 기간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택시 등록대수,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광고의 과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표시방법, 규격 등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도 및 시·군·구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 및 시·군·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

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 또는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44조(옥외광고사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이란 별표 6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2.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6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해주었으면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5조(변경등록)** ① 옥외광고사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제46조(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옥외광고사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등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7조(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등록증
2. 재개업의 경우: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재개업 신고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4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

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 조례로 정한다.

**제52조(행정처분의 통보)**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다른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3조(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 ①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옥외광고사업자가 다른 시장등의 관할구역에서 옥외광고사업 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330)

## 1. 의안명: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심사경과

- 제출연월일 : 2017. 3. 8. (수)
- 제출자 : 중구청장
- 위원회회부 : 2017. 3. 10.(금)
- 위원회심사 : 2017. 3. 17.(금)

## 3. 제안설명요지(제안설명자 : 서인보 건설도시국장)

### 가. 제안이유

-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2016. 1. 6) 되었으며,
- 같은 법 시행령 일부 개정(2016. 7. 6)에 따른 관련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조례명을 상위 법령명 변경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제명 변경)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 명칭을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변경(안 제2조)
-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명칭을 '벽면 이용 간판'으로 변경(안 제5조)
- 전자게시대 표출관리 근거 마련 및 전자게시대 설치규제 완화(안 제6조)
- 그 밖에 법제처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4. 근거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울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5. 검토보고(전문위원 김익희)

-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일부 개정(2016. 1. 6) 되고,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2016. 7. 6) 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상위법과 관련규정을 검토한 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 7. 수정사항

- 안 제5조 중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①”을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제15조제4호 나목에”를 “제15조제4호나목에”로 한다.
- 안 제14조제3항 중 두 번째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4항”은 “제5항”으로 한다.
- 안 제14조제4항 중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을 “운영에 필요한”으로 한다.
- 안 제15조 중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에게는”으로 한다.
- 안 제24조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 안 제24조제4항 중 “제3항에”를 “제3항에도”로 한다.



##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15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한 <u>위원에 대하여</u> 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 ----- <u>위원에게는</u> ----- ----- ----- -----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② (생략) 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 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u>자</u> 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 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u>제3항</u> 에 불 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제24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 ② (생략) ③ ----- ----- <u>사람</u> ----- ----- ----- ----- ----- ----- ----- -----